

반려동물사료의 기타 표시사항(제10조제1항 관련)

1. 대상

본 별표상의 규정은 반려동물사료(본 별표에서 반려동물사료는 개 사료, 고양이 사료를 의미한다. 이하 “반려동물사료”)를 대상으로 한다. 개 사료와 고양이 사료를 제외한 다른 사료는 별표 15를 따른다.

2. 용어의 정의

가. “제품명”이란 개개의 제품을 나타내는 고유의 명칭을 말한다.

나. “제조연월일”이라 함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가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포장 후 멸균 및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사료는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을 말한다. 다만, 소분판매하는 사료는 소분용 원사료의 제조연월일로, 원사료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는 사료는 원사료의 포장시점으로 한다.(제조연월일의 영문명 및 약자 예시: Date of Manufacture, Manufacturing Date, MFG, M PRO(P), PROD, PRD)

다. “유통기한” 또는 “유통기간”이라 함은 사료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예시: 2024.12.31.까지) 또는 기간(예시: 2024.1.1.~2024.12.31.)을 말한다.

라. “품질유지기한”이라 함은 사료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사료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품질유지기한 영문명 및 약자 예시 : Best before date, Date of Minimum Durability, Best before, BBE, BE)

마. “주표시면”이라 함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사료를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한다.

바. “정보표시면”이라 함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

사. “유통전문판매업체”이라 함은 반려동물사료를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사료제조업체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사료를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말한다.

3. 반려동물사료 공통 표시사항

가. 제품명 : 별표 15의2 5. 규정 참조

나.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 관할 시·도에 등록한 성분등록번호

다. 사료의 명칭 및 형태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참조

라.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 별표 15의2 6. 규정 참조

마. 사료의 용도 : 사료의 용도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참조

[표시 예: 개와 고양이용, 반려견, 반려묘용, 3개월 이상 자견용, 3개월 이상 자묘용, 1세 이상 성견용, 1세 이상 성묘용, 전연령견용, 전연령묘용, 7세 이상 반려견용, 7세 이상 반려묘용 등]

바. 등록성분량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참조

사. 사용한 원료의 명칭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참조

아. 주의사항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참조

자. 실제 중량(내용량)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참조(단, 포장의 크기, 성질 등에 따라 단위를 g, ml, l로 표시할 수 있다.)

차. 동물용의약품 첨가 내용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참조

카. 제조(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한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참조

타.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 사료성분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명 및 소재지를 표시(단, 사료 제조업체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사료를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사료의 경우, 유통전문판매업체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를 추가 표시)

파. 재포장 내용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참조

4. 공통 표시사항의 표시방법

가. 표시는 한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의 활자보다 크게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입되는 사료와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 제품명 등은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표시 활자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다.

나. 표시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된 최소판매 단위 제품의 주표시면 면적이 30cm² 이하이고 여러 개의 최소판매 단위 제품이 하나의 용기·포장으로 진열·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경우에는 그 용기·포장에 대신 표시 개별포장(내포장)에 제품명 등의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표시를 하되, 외포장 내용으로 정보 제공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 내용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최소 판매단위 포장 안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개별포장(이하 “내포장”이라 한다)한 사료의 경우에는 내포장별로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등록성분량, 중량,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등을 표시할 수 있다.

라. 표시는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하거나 각인(刻印) 또는 소인(消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벌크 사료 운반차량 및 탱크로리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차 내부에 비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세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인쇄 또는 기재된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 1) 제품 포장의 특성상 인쇄, 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톤백포장, 드럼통, 컨테이너, 합성수지제 용기 등)
- 2) 통·병조립 및 병제품 등의 경우. 다만, 제조(수입)연월일은 제외한다.
- 3)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사료 제조업자의 제품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의 경우. 다만, 제조(수입)연월일은 제외한다.
- 4) 제조업등록 및 성분등록 한 내용이 변경되어 시·도지사에 변경등록이 수리된 경우와 단순 표시 오류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표시사항이 인쇄 또는 기재된 스티커 및 라벨 등을 사용하여 변경사항만을 변경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이란 표시내용의 오·탈자, 등록성분의 단위, 재포장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다만, 사료의 성분 등록번호, 등록성분량, 동물용의약품 첨가 내용, 중량, 제조(수입)연월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는 변경처리 할 수 없다.
- 5) 소량 생산하는 제품 등 특성상 공통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 다만, 제조(수입)연월일은 제외한다.
- 6) 별표9에 따라 조사처리 관련 문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마.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주표시면,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제조(수입)연월일, 유통기한 등 일부 표시사항의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인 또는 압인(壓印) 등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표시장소별 표시사항 및 활자크기

표시장소	표시사항	활자크기 (포인트)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	① 제품명	8 이상
	② 성분등록번호	8 이상
	③ 사료의 명칭 및 형태	8 이상
	④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8 이상
	⑤ 사료의 용도	8 이상
	⑥ 등록성분량	7 이상
	⑦ 사용한 원료의 명칭	7 이상
	⑧ 실제 중량(내용량)	12 이상
	⑨ 제조(수입)연월일 및 유통기한	10 이상
	⑩ 동물용의약품 첨가내용(해당 사항이 없으면 생략 가능)	8 이상
정보표시면 또는 기타 표시면	①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유통전문판매업체의 경우, 유통전문판매업체의 상호·주소 및 전화번호)	8 이상
	② 재포장 내용 표시(해당 사항이 없으면 생략 가능)	10 이상
	③ 주의사항	10 이상
	④ 기타사항	6 이상

2)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 면적이 200cm² 이하인 제품의 경우 1)의 표시사항에서 규정한 활자 크기보다 2포인트 작게 표시할 수 있다.

3) 내포장한 제품의 표시사항 및 활자크기는 1)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바. 제품명 : 별표15의2 5. 규정 참조

사. 사료의 명칭 및 형태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참조

아.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 별표15의2 6. 규정 참조

자. 사료의 용도 : 별표15의2 3. 마. 규정 참고

카. 등록성분량 : 등록성분량은 성분등록된 성분명과 성분량을 표시하며, 성분량 표시는 백분율(%)로 하고, 최저량에는 “이상”, 최대량에는 “이하”를 표시한다.

타. 사용한 원료의 명칭 및 함량 : 별표15의2 8. 규정 참조

파. 실제 중량(내용량)

1) 실제 중량(내용량)은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용량 또는 개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물이 고체 또는 반고체일 경우 중량(톤, kg, g 등)으로, 액체일 경우 용량(kl, l, ml 등)으로,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일 경우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하고, 개수로 표시할 때에는 중량 또는 용량을 괄호 속에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2) 급여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액체 제외)와 함께 포장되는 사료는 액체를 뺀 사료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정제형태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에는 판매되는 한 용기·포장내의 정제수와 총중량을, 캡슐형태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에는 캡슐수와 피포제 중량을 제외한 내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포제의 중량은 내용물을 포함한 캡슐 전체 중량의 50%미만이어야 한다.

하. 제조연월일(이하 “제조일”로 표시할 수 있다)

1) 제조일은 “○○년○○월○○일”, “○○.○○.○○”, “○○○○년○○월○○일”, “○○○○.○○.○○” 또는 “유통기한으로부터 ○○월 전 제조”로 표시하여야 하고, 정보표시면에 일괄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제조일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동일제품으로서 국내 내수용과 수출을 동시목적으로 제조된 사료의 경우에는 “○○일○○월○○년”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한다.

2) 수입되는 사료에 표시된 수출국의 제조일의 “연월일”의 표시순서가 1)의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연월일”의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하며, “연월”만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연월일” 중 “일”의 표시는 제품의 표시된 해당 “월”의 1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제조일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하였을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빠른 제조일 하나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거.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표시

- 1) 유통기한은 제조일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표시면에 일괄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 2) 유통기한의 표시는 유통기한이 1개월 이내이면 "제조일로부터 ○○일까지", 유통기한이 12개월 미만이면 "제조일로부터 ○○개월까지", 유통기한이 1년 이상이면 "제조일로부터 ○○개월까지 또는 ○○년까지"로 표시하여야 하며, 유통기한의 표시는 "○○년○○월○○일까지" 또는 "○○.○○.○○까지", "○○○○년○○월○○일까지" 또는 "○○○○.○○.○○까지"로 표시하여야 한다.
 - 3) 수입되는 사료인 경우 수출국의 유통기한 표시순서가 위의 2) 표시순서와 다를 때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하며, "연월"만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연월일" 중 "일"의 표시는 제품의 표시된 해당 "월"의 1일로 표시하여야 한다.
 - 4)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하였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짧은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하나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 5)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해당 제품의 사용 또는 보관에 관한 기준이 정해진 경우에는 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냉동 또는 냉장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제품은 「냉동보관」 또는 「냉장보관」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 나. 제조업자의 상호(공장 명칭) 및 주소 표시 : 사료성분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 다. 유통전문판매업체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표시 : 사료 제조업체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사료를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사료의 경우, 유통전문판매업체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를 추가 표시
- 러. 재포장내용 표시 : 사료를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원래 표시 사항을 그대로 표시하여야 하며, 재포장한 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도 표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재포장한 자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머. 수입사료에 대한 표시방법

- 1)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료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고,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원래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원료명, 수입연월일(또는 제조연월일),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등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포장하여 수입되는 사료의 경우에는 위 제4호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시사항을 스티커 등으로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수입업자의 상호 및 주소는 사료성분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고, 수입신고한 해당 사료의 수출국명과 제조회사명을 병행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국명과 제조회사명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으면 한글로 따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한글표시 스티커 등에 당해 제품수출국의 언어로 표시할 수 있다.
- 3) 수입되는 사료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가) 용기·포장에 놓여지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
 - 나)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사료 및 사료원료.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용으로 수입되는 것은 제외한다.
- 4) 외국의 인증마크 중 국내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HACCP 사료공장, 유기농, 친환경 등)은 표시할 수 없다. 수입된 제품에 표기된 경우에는 스티커 등으로 가려야 한다.
- 5) 수출국의 등록성분 표시사항이 사료성분등록증의 성분량과 비교하여 「사료검사기준」 별표 4의 허용오차를 벗어난 경우에는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가려야 한다.
- 6) 수입연월일은 수출국의 제조연월일이 표시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5. 제품명 표시방법

- 가. 제품명(또는 브랜드명) 또는 제품명 일부에 원료명을 사용한 경우, 해당 원료명과 그 함량 비율(%)을 사용한 원료 명칭란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원료의 함량 비율(%)의 표시는 배합기준 또는 건물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예시: 연어(배합기준 22%), 황태분말(건물기준 1.5%)]

6.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가. 반려동물완전사료

- 1) “반려동물완전사료”란 별도의 영양공급 없이 성장단계별 반려동물의 영양소 요구량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영양 조성이 구성되어 있는 반려동물사료를 의미한다.
- 2)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설정한 “영양표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국립축산과학원은 사료 영양학적으로 검증되거나 국제적으로 인증된 기준에 부합하는 영양표준을 설정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연구·검토,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종별, 성장단계별로 영양표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3)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한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필요한 경우 해당 사료가 “영양표준”에 부합하게 제조되었다는 사실을 전문적인 인적·물적 능력을 보유한 기관(사료검정기관, 사료시험검사기관,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시험기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업종별·분야별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된 시험기관)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4) “영양표준”에 부합하는 사료의 경우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붙임 1]과 같다.

나. 반려동물기타사료

- 1) “반려동물기타사료”란 반려동물사료 중 가. 반려동물완전사료에 해당되지 않는 사료를 의미한다.
- 2) 반려동물사료 중 가. 반려동물완전사료에 해당되지 않는 사료는 “반려동물기타사료”라고 표시한다.
- 3)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붙임 2]와 같다.

7. 공통 표시사항 외 표시방법

가.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은 “살균제품”, “멸균제품”으로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9 사료의 멸균 및 살균처리 기준 참고)

나.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표시는 스티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건본품이나 비매품 등)는 제품명,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유통기한, 주의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라. 수출사료는 수입국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마. 제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제의 용기 또는 포장지에 대한 포장재질 표시

- 1) 합성수지제의 재질에 따라 염화비닐수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폴리염화비닐리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페놀수지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
-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염화비닐수지(PVC)가 표시되어 있으면 별도 재질표시 생략 가능

바.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 ○○포함 사료” 또는 사용한 원료의 명칭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변형된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유전자변형 ○○포함 가능성 있음”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 “○○”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옥수수, 콩, 감자 등)을 적어야 한다.

사. 품질유지기한

- 1) 소비자의 올바른 사료사용을 위하여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통조림 형태로 되어 있는 사료는 품질유지기한을 가급적 표시하여야 한다.
- 2) 품질유지기한은 “○○년○○월○○일”, “○○.○○.○○”, “○○○○년○○월○○일” 또는 “○○○○.○○.○○”로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표시사항은 4. 하. 1)부터 5)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3)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사료는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4) 유통기한과 함께 표시하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는 스티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아. 기타 표시사항

- 1) 레토르트(retort)사료는 “레토르트사료”로 표시하여야 한다.
- 2) 희석·용해하여 급여하는 제품은 그 희석배수 또는 희석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 3)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1부터 별표 13의 비고란에서 표시하도록 기준이 설정된 사항은 표시하여야 하며, 미생물제를 이용해서 발효한 사료 중 그 명칭 앞에 “발효”를 표시한 경우(예 : 발효대두박)에는 균주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3의3 참조).
- 4) 발효제품 또는 미생물제 첨가제품은 효모 또는 균수 등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8. 원료 표시방법

- 가. 사료의 제조 시 사용한 모든 원료의 명칭(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정제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량 비율로서 2% 미만인 경우에는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표시할 수 있다.
- 나. 프리믹스원료 및 각종 합제류 등의 복합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원료의 명칭과 함께 괄호 안에 대표 원료 2가지 이상을 함량 순서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원료에 포함된 원료가 제품명에 사용되는 경우 또는 반려동물의 건강·기능 등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의 명칭 및 해당 원료의 함량 또는 함량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 다. 식육의 특정 부위를 사용하는 제품은 식육의 원료육 명칭 뒤에 괄호로 그 부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라. 원재료의 전부가 식육인 것으로 오인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식육의 함량을 해당 표시와 동일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마. 어분, 육분, 육골분 등을 사용한 경우 원재료 명칭에 “OO고기”라고 표시할 수 없다. 다만, 사용한 원료 중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의 명칭으로 표시하는데 한계가 있는 다음 원료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표시하고, 이외 원료의 경우 괄호 안에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원료명으로 병기할 수 있다.

사료 공정서 명칭	병기 가능 표시 명칭
수지박 (우지박, 돈지박 포함)	동물성 기름 가공 부산물, 소기름 가공 부산물, 돼지기름 가공 부산물
어분 (어류의 가공품 및 부산물 포함)	단일 생선일 경우 어종을 추가하여 표시 가능 예시: 참치 분말, 부산물 포함 시 생선 부산물 분말로 표기
유도단백질 (가수분해 효소 처리 등을 한 것을 포함)	가수분해단백질(단일 동물 원료일 경우 동물명 표시 가능) 예시: 닭, 연어 가수분해단백질
육분	고기 부산물 분말(단일 동물 원료일 경우 동물명 표시 가능 예시: 소, 돼지 부산물 분말 (단, 고기(소, 돼지) 분말로 표시할 경우 부산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육골분	뼈에 붙은 고기 및 뼈 부산물 분말
어골분	생선 뼈 분말(단일 생선일 경우 어류명 표시 가능) 예시: 참치 뼈 부산물 분말

- 바.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제6조제2호 규정에 의한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또는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5 및 별표 6에 기재된 단미·보조사료를 원료에 사용하는 경우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5 및 별표 6, 별표 13 제2호 참조)
 - 1) 원료의 명칭을 표시할 때에는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5 및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을 쓰고, 필요시 원소 및 화합물의 화학 명칭을 공정에 기재된 영문명을 병기.
예) 비타민B12 (Cyanocobalamin), 비타민C (Ascorbic acid)
 - 2) 유효 성분명 및 함량, 부형물질 등의 명칭 및 함량. 다만, 착향료에 있어서는 유효성분명 및 함량의 표시가 필요 없다. 또한 별표 5 및 별표 6에서 정량법이 정하여 있지 않은 사료(착향료는 제외한다)의

함량은 함유율을 중량 퍼센트(%)로 표시한다.

3) 첨가할 수 있는 배합사료의 종류 및 양

4) 보존상의 주의사항은 별표 5 및 별표 6에서 정하여진 보존방법을 기재한다.

사. 단미사료(광물성사료에 한한다)·보조사료·식품첨가물(이하 “보조사료등”이라 한다)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표 4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료를 제조 시에 직접 사용·첨가하는 보조사료등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해당 규정에 따라 그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 식용색소 청색5호(착색료), 안식향산(보존료)]

2)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표 5에 해당하는 보조사료등의 경우에는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명칭이나 같은 표에서 규정한 간략명(결정성유소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표 6에 해당하는 보조사료등의 경우에는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명칭이나 같은 표에서 규정한 간략명 또는 주용도(중복된 사용 목적을 가질 경우에는 주요 목적을 주용도로 한다.)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식품등의 표시기준」 표 6에서 규정한 주용도(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유화제, 증점제, 합성착향료, 피막제, 향미증진제, 효소제제 등)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고시한 명칭 또는 간략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9. 원료 표시방법의 예외

가. 전분은 “전분명(OO전분)” 또는 “전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

나. 당해 제품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나 사료의 원료에서 이행(carry-over)된 보조사료 등이 제품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양보다 적게 함유된 경우에는 그 보조사료 등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사료의 가공과정 중 첨가되어 최종 제품에 제거되는 보조사료등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주표시면의 면적이 30cm² 이하인 것은 정제수를 제외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

마. 유지류는 “유지류 명칭” 또는 “동물성 유지, 식물성 유지(올리브유 제외)”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수소첨가료 경화한 식용유지에 대하여는 경화유 또는 부분경화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예시 : 식물성 유지(부분경화유) 또는 대두부분경화유 등]

바. 단미사료(동식물성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원재료 중 개별 원재료의 중량 비율이 2% 미만인 경우에는 사료종류 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제 1. 3. 식품원재료 분류 1), 2)에서 정한 분류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다.

사. 천연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천연착향료” 또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합성 착향료와 그 향의 명칭”으로 표시[예시 : 합성착향료(OO향)]할 수 있다.

10. 강조표시 기준

가. “유기”, “Organic” 등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유기식품등의 표시 등)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나. “천연”의 표시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천연첨가물의 경우에는 표시가 가능하며, 합성결착제·인공(조합)향·합성착색제·합성보존제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시가 가능하다.

다. “100%”의 표시는 표시대상 원재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농축액을 희석하여 원상태로 환원하여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환원된 표시대상 원재료의 농도가 100% 이상이면 제품 내에 보조사료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00% 표시를 할 수 있다.

라. 특정균 등의 함유 사실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균 등의 g당 함유 균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마.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영양소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의 과정을 하지 아니한 원래의 사료에 해당 영양소 함량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양소에 대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합성착향료를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그 향 또는 맛을 뜻하는 그림, 사진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아래 예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 가능
(예시) 원재료로 사과과즙과 착향료를 함께 사용한 경우에는 사과 그림 등을 표시 가능
- 3) “무 보존제(또는 무 보존료)”, “보존제 무첨가(또는 보존료 무첨가)”, “무 착색제(또는 무 색소)”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존제와 착색제를 직접 첨가하지 않고, 원재료로부터 이행(carry-over)된 보존제와 착색제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표시가 가능하다.
- 4) “이온수”, “생명수”, “약수”, “무 방부제”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등록성분의 실제 측정값의 허용 오차범위(권고기준)

가. 최저량(이상)에 해당하는 등록성분의 실제측정 값은 가급적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나. 최고량(이하)에 해당하는 등록성분의 실제측정 값은 가급적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위의 가. 및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 규정에 의한 등록성분량이 “최저량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측정 값은 표시 값 이상이어야 하고, 성분규격이 “최대량 이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시 값 이하여야 한다.

라. 실제 측정값이 다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 양이 사료검사기준 별표 4의 허용오차에서 인정하는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허용오차를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2. 냉동 반려동물사료의 표시사항

가. 냉동 반려동물사료는 유형에 따라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 반려동물사료의 경우는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 반려동물사료”로,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 반려동물사료의 경우는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 반려동물사료”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나.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 반려동물사료”의 경우 살균한 제품은 “살균제품”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 냉동 반려동물사료는 해당 사료의 냉동보관방법 및 조리시의 해동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조리 또는 가열처리가 필요한 냉동 반려동물사료는 그 조리 또는 가열처리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마. 제조업체가 냉동 사료를 해동하여 출고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해동연월일, 냉동 사료로서의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이내로 설정한 해동 후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해동 후 보관방법 및 주의사항을 주표시면에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3. 주의사항 표시

가. 사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도 포장하여 넣은 선도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방습제)”, “습기제거제(제습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먹어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주의 문구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나. 냉동 유통되는 사료에 대하여는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체가 냉동된 사료를 해동하여 출고할 때에는 “이 사료는 냉동된 사료를 해동한 사료이니 재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수분함량이 14%를 초과하는 배합사료와 수분함량이 12%를 초과하는 단미·보조사료 등의 경우, 제품의 경우, 개봉 후 부패·변질될 수 있으므로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사용하기 바랍니다.”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원터치캔” 통조림 제품에 대하여는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마. 누구든지 반려동물사료에는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을 포함)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폴리스티렌, 멜라민수지, 페놀수지 및 요소수지 재질의 용기·포장재는 가열·조리시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사.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분 등 보조사료에는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급여하거나 음용시키지 마십시오.”,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등의 취급상 주의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14. 허위 및 과장 표시·광고의 범위

가. 법 제8조에 따른 제조업등록과 법 제12조에 따른 성분등록에 따라 등록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나. 법 제16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표시한 명칭 및 표시·광고

다. 법 제19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라.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1) “사료”는 동물의 영양이 되거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질병을 치료·경감·치치 또는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 할 수 없다.

2) 표시·광고된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II.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지침 - 5.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광고 기준 참고

3) 「약사법」 제2조제4호에서 의약품을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기계·장치 제외)으로 정의하고 있어 빈혈예방, 고혈압예방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약사법」 제61조제2항에서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할 수 없다.

마. 제조방법,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바.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축산학·사료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축산학·사료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는 제외한다.

사.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

2)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

아.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1) 사료영양학·축산가공학·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나 발견한 사실을 인용하거나 명시하는 표시·광고. 다만, 사료영양학 등 해당 분야의 문헌을 인용하여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2) 사람이 먹는 식품이나 음료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반려동물 사료등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3)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4) 의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5) 외국어의 남용 등으로 인하여 외국 제품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6)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표시·광고
- 7) 해당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사료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만 금지된 사료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광고
- 8)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푸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등 식품 관련법상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제조업체 등이 식품 관련법상의 기준을 충족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자.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나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원료·등록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

차.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카.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타. 소비자가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을 포함)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광고

파. 허위 및 과장 표시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광고의 범위

- 1) 동물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 2) 동물의 건강유지·건강증진·체력유지·체질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 3) 동물의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 다만, 당뇨병·변비·암 등 특정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군)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사료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사료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가) 비타민 ○는 ○○작용을 하여 동물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
 - 나)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표현
-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소의 기능성분 함량
- 6) 사료의 제조목적이나 주요 용도에 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가) 해당 사료가 어린동물, 아픈동물 등에게 급여하기 위한 목적의 사료라는 표현
 - 나) 해당 사료가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노령기 등 동물의 특정 성장단계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사료라는 것과 이와 유사한 표현
- 7) 해당 제품의 사료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급여방법 또는 급여량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15. 그 밖의 표시사항

가. 유효성분명 및 함량의 표시방법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5의2]에서 규정하지 않았으나 [별표 15]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15]를 따른다.

[붙임 1]

반려동물완전사료의 표시

1. 표시문구 예시

<예시1> 비타민A, D, E B₁,이 반려동물의 건강·기능 등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제품명 : 에이비씨 닭고기와 쌀
-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 IJKL9123
- 사료의 명칭 및 형태 : 애완육성개1호/익스투루전(팽화)
-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 반려동물완전사료
- 사료의 용도 : 7세 이상 반려견용
- 등록성분량

성분명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수분
성분량	25.0% 이상	12.0% 이상	0.9% 이상	0.8% 이상	4.0% 이하	8.0% 이하	10.0% 이하

- 사용한 원료의 명칭 : 닭고기(배합기준 24%), 쌀(배합기준 15%), 대두박, 비트펄프, 닭기름, 맥주효모, 염화칼륨, 치커리, DL-메티오닌, L-라이신, 탄산칼슘, 미네랄합제(철, 구리, 아연 등), 비타민합제(비타민A(25,000 IU, 비타민D 1,200 IU, 비타민E 400 IU, 비타민B1 8 mg 외),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항산화제)
- 실제 중량 : 2kg
- 제조 연월일 : 제조일로부터 18개월(년.월.일)
- 유통기한 : 제품 뒷면 표시(년.월.일)
- 제조업자 :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 유통전문판매업체 : 상호·주소 및 전화번호
- 재포장 내용 :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또는 해당없음)
- 주의사항 : 직사광선을 피해 습기가 없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개봉 후 빨리 급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 유전자변형00 포함 가능성 있음 (또는 해당없음)

<예시2>비타민A, D, E가 반려동물의 건강·기능 등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제품명 : 에이비씨 소고기와 참치
-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 IJKL9124
- 사료의 명칭 : 애완큰(어른)고양이3호
- 사료의 형태 : 액상고형물사료
-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 반려동물완전사료
- 사료의 용도 : 1세 이상 고양이용
- 등록성분량

성분명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수분
성분량	11.0% 이상	6.0% 이상	0.2% 이상	0.2% 이상	1.0% 이하	3.0% 이하	80.0% 이하

- 사용한 원료의 명칭 : 소고기(배합기준 30%), 참치(배합기준 15%), 타피오카, 카놀라유, 미네랄합제(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합제(비타민A 2,300 IU, 비타민D 31 IU, 비타민E 4.8 IU)
- 실제 중량 : 100g
- 제조 연월일 : 제조일로부터 24개월(년.월.일)
- 유통기한 : 제품 측면 표시(년.월.일)
- 제조업자 :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 유통전문판매업체 : 상호·주소 및 전화번호
- 재포장 내용 :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또는 해당없음)
- 주의사항 : 직사광선을 피해 습기가 없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개봉 후 냉장보관 하거나 빨리 급여하시기 바랍니다.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
- 기타 : 유전자변형00 포함 가능성 있음 (또는 해당없음)

[붙임 2]

반려동물기타사료의 표시

1. 표시문구 예시

반려동물기타사료

반려동물기타사료-간식

반려동물기타사료-간식(익스트루전)

반려동물기타사료-간식(육포)

반려동물기타사료-간식(건조육)

반려동물기타사료-간식(껌)

반려동물기타사료-간식(동결건조)

반려동물기타사료-간식(비스킷)

반려동물기타사료-간식(습식)

반려동물기타사료-간식(습식캔)

반려동물기타사료-간식(레토르트)

반려동물기타사료-간식(트레이사료)

반려동물기타사료-영양보충용

반려동물기타사료-영양조절용

반려동물기타사료-식이조절용

반려동물기타사료-첨가제(비타민C)

반려동물기타사료-첨가제(비타민 프리믹스)

반려동물기타사료-유년기 펫밀크

반려동물기타사료-음료

2. 표시예시

<예시1>

- 제품명 : 에이비씨 육포
-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 IJKL9125
- 사료의 명칭 : 육포
- 사료의 형태 : 육포사료
-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 반려동물기타사료-간식(육포)
- 사료의 용도 : 반려견용
- 등록성분량

성분명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	수분
성분량	40.0% 이상	5.0% 이상	6.0% 이하	28.0% 이하

- 사용한 원료의 명칭 : 오리고기, 소르빈산칼륨(산미제)
- 실제 중량 : 300g
- 제조 연월일 : 제조일로부터 12개월(년.월.일)
- 유통기한 : 제품 뒷면 표시(년.월.일)
- 제조업자 :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 재포장 내용 :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또는 해당없음)
- 기타 : 유전자변형00 포함 가능성 있음 (또는 해당없음)
- 주의사항 : 직사광선을 피해 습기가 없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개봉후 빨리 급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2>

- 제품명 : 에이비씨 덴탈츄
-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 IJKL9126
- 사료의 명칭 : 배합사료
- 사료의 형태 : 스틱
-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 반려동물기타사료-간식(껌)
- 사료의 용도 : 3개월령 이상 반려견용
- 등록성분량

성분명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수분
성분량	5.0% 이상	3.0% 이상	0.01% 이상	0.01% 이상	2.0% 이하	3.0% 이하	20.0% 이하

- 사용한 원료의 명칭 : 타피오카, 이소말토올리고당, 현미분말, 젤라틴, 글리세린, 식이섬유,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유화제), 비타민합제(비타민B1, B2, B6, D3, E), 소르빈산 칼륨(산미제), 천연색소
- 실제 중량 : 150g
- 제조 연월일 : 제조일로부터 18개월(년.월.일)
- 유통기한 : 제품 뒷면 표시(년.월.일)
- 제조업자 :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 유통전문판매업체 : 상호·주소 및 전화번호
- 재포장 내용 :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또는 해당없음)
- 기타 : 유전자변형00 포함 가능성 있음 (또는 해당없음)
- 주의사항 : 직사광선을 피해 습기가 없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개봉후 빨리 사용하기 바랍니다.

<예시3>

- 제품명 : 에이비캔-닭고기와 호박캔
-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 IJKL9127
- 사료의 명칭 : 혼합성단미사료
-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 반려동물기타사료-간식(습식캔)
- 사료의 형태 : 액상고형물사료
- 사료의 용도 : 전연령 고양이용
- 등록성분량

성분명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수분
성분량	12.5% 이상	0.5% 이상	0.5% 이하	1.0% 이하	82.0% 이하

- 사용한 원료의 명칭 : 닭고기(배합기준 70%), 정제수, 호박(배합기준 5%), 쌀
- 실제 중량 : 70ml
- 제조 연월일 : 제품 하단 표시(BC 일.월.년)
- 유통기한 : 제품 하단 표시(BBD 일.월.년)
- 제조업자 :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 재포장 내용 :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또는 해당없음)
- 기타 : 유전자변형00 포함 가능성 있음 (또는 해당없음)
- 주의사항 : 직사광선을 피해 습기가 없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급여하시기 바랍니다.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